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. 6. 13 선고 2022가단10678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5. 16.

판 결 선 고 2023. 6. 1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소외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01. 4. 26. 체결된 재산분할협의계약을 23,581,283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3,581,2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

가. 관련 법리

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(민법 제406조 제2항),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이 도과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여야 하며,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(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다1700 판결 등 참조).

나. 판단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포항시 북구청,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D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이 사건 소 제기시로부터 5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,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.

(1)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상 피고의 재산분할협의날짜는 2001. 4. 26.이고,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도 등기원인이 '2001. 4. 26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'으로 기재되어 있다.

(2) 피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도 2017. 11. 24.이다.

(3)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. 11. 24.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사건 신청서 및 부속서류들은 이미 폐기되었다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실제로 있었던 날짜에 대하여는 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다.

(4) 원고는 이 사건 소가 2022. 9. 20. 제기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2017. 11. 24.로부터 5년 이내라고 주장하나, 원고가 스스로 특정한 사해행위일자도 2001. 4.

26.일뿐만 아니라, 2017. 11. 24. 실제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진숙

별지